

인도의 외국 벤처 캐피털 투자규제에 대한 고찰

정보신청기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I. 들어가는 말

각국의 인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1년만 해도 거의 없었는데,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에는 GDP 대비 약 1% 수준의 해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가 유입되었는데, 2007년 이후에는 GDP 대비 약 2%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었다. 특히, 금융위기가 도래한 2007년 이후인 2008년에도 약 33억 달러가 유입되어 전년도 대비 44%가 증가될 정도로 각국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¹⁾

반면 한국의 인도에 대한 직접투자는 아직까지도 미미한 수준이다. 1968~2009년 3월까지의 인도에 대한 누적투자금액은 156억 달러이며, 이는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금액 1,225억 달러의 1.3%에 불과하다. 이는 투자금액 면에서 해

외 투자 대상국 중 15위에 해당하는데, 베트남이 4.2%로 4위, 인도네시아가 2.8%로 6위인 것보다도 뒤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이 인도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것은 지금까지의 투자가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 동남아 국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²⁾

그러나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약 11억 5천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으로 한국도 향후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는 외국인의 직접투자, 특히 벤처 캐피털을 중심으로 인도에서 어떻게 이를 규제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논의 방식으로는 먼저 벤처 캐피털의 기본적인 개념 및 투자 형태를 살펴보고, 이후 인도의 외국인 벤처 캐피털 투자 규제 규칙인 Foreign Venture Capital Investment Regulations(2000)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정무섭/감독갑, “한국의 대 인도 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SERI경제포커스」(삼성경제연구소, 2009. 9. 8), 1쪽.

2) 위의 글, 1~2쪽.

II. 한국의 벤처 캐피탈의 발전과 해외 투자 현황

1. 벤처 캐피탈의 의의

(1) 벤처 캐피탈의 개념

벤처 캐피탈의 기원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의 유럽에서 인도로의 여행과 관련이 있다. 포르투갈의 왕은 그의 여행이 매우 위험스런 모험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거절하였다. 하지만, 스페인 여왕 이사벨 1세는 그의 여행에 대하여 “위험은 크나 그 대가는 엄청나다(the risks were great but the rewards were greater)”고 언급하면서 그의 여행에 대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투자가 벤처 캐피탈의 기원으로 파악되고 있다.³⁾ 반면 현대적 의미의 벤처 캐피탈은 1946년 미국 MIT에서 General Doriot가 미국 대학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의 상업화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American Research Development Fund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⁴⁾

이러한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 VC)의 개

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으나,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능력이 취약한 기업에 기업설립 초기단계부터 자본과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투자기업을 육성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금융방식을 말한다고 한다.⁵⁾ 다시 말하면, 벤처 캐피탈은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한 종류로 높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여⁶⁾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나 인수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M&A), 인수 후 개발(acquisition & development; A&D)을 통하여 투자 자금의 회수(exit)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 방식을 말한다.⁷⁾

(2) 벤처 캐피탈의 발전

한국 최초의 벤처 캐피탈 회사는 1974년 설립된 한국기술진흥주식회사(KTAC)인데, 이 회사는 한국과학기술원(KIST)의 연구 결과를 기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한국 벤처 캐피탈의 발전 단계는 다음 4단계(도입기, 생성기, 도약기, 성장기)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도입기(1974~1985)로, 한국기술진흥(현



3) <http://www.vinodkothari.com/tutorials/Venture%20Capital%20Regulations%20-%20India.pdf>, 2011. 3. 16.

4) <http://ezinearticles.com/?Venture-Capital&id=210088>, 2011. 3. 16.

5) “기술 혁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회사”라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L. Bollinger/K. Hope and J.M. Utterback, “A review of Literature and Hyptheses on New Technology Based Firms”, *Research Policy*, Vol. 12, 1983, p. 1).

6) 벤처 캐피탈의 투자는 투자대상기업 주주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전환사채의 인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대여 등의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김서균, “국내 벤처 캐피탈의 투자행태 및 IT 투자 방향 분석”, 「전자통신동향분석(제16권 제5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1. 10), 169쪽).

7) 김서균, 위의 글, 169쪽.

기보캐피탈)을 시작으로 1981년 한국기술개발(현 KTB 네트워크), 1984년 국제금융공사와 아시아개발은행이 공동 출자한 한국개발투자(현 TG벤처), 그리고 산업은행이 한국기술금융(현 산은캐피탈)을 중심으로 벤처 캐피탈 산업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는 국가 기반산업의 지원시기로 신기술 기업화를 위한 투자와 담보 중심의 융자, 리스 및 팩터링이 그 중심에 있었다.

둘째, 생성기(1986~1995)로, 1986년 5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제정으로 국내에 본격적인 벤처 캐피탈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부터 민간 벤처 캐피탈 설립이 용이하여짐으로써 반도체 부품, 장비, 자동차 부품, 응용 기술 분야 등 부품·소재 분야에 투자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신생 벤처기업의 발굴에 대한 프로세스나 마인드를 갖추지 않은 상태였고, 첨단 기술벤처(High-Tech Venture)를 백업하는 현재 벤처 캐피탈의 개념은 도입되지 않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도약기(1996~1999)로, 1996년 코스닥 시장의 개설과 인터넷 비즈니스의 붐으로 첨단 기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들이 설립되어 하이테크 벤처기업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단행한 시기를 말한다. 이 때의 벤처 캐피탈로는 LG 벤처투자, 무한기술투자, 한국 IT벤처투자 등을 들 수 있다.



8) 김서균, 위의 글, 168~169쪽.

9) 김서균, 위의 글, 169쪽.

마지막으로 성장기(2000~ 현재)로, 2000년 1/4분기 이후 거품 논쟁의 대두로 코스닥 시장이 붕괴되어 벤처 기업 또한 어려움을 겪은 이후 투자의 패턴이 전문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투자회수 전략도 M&A, A&D 등 새로운 투자 회수 기법이 부상하고 미래가치에 집중했던 기존 투자 패턴에서 실질 가치를 중요시하는 패턴으로 변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⁸⁾

(3) 벤처 캐피탈의 투자 메커니즘

벤처 캐피탈의 투자 메커니즘은 ① 투자자금의 마련, ② 투자회사의 발굴, ③ 투자집행, ④ 투자회사의 가치 육성, ⑤ 투자회수로 나눌 수 있다. 위의 순서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① 투자자금의 마련

벤처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의 마련 방법은 통상 2가지의 방법이 있다. 우선 자기 자본의 계정을 통하여 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자기 자본만으로는 투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펀드를 운용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특정 벤처 펀드'라는 명칭을 붙여 조성을 하고 벤처 투자조합의 자금을 벤처 캐피탈이 맡아서 운영하게 된다. 이 때 벤처 캐피탈은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으로 자금을 운용하게 된다.⁹⁾

② 투자회사의 발굴

투자할 벤처기업의 발굴은 벤처 캐피탈의 절대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발굴 초기 단계에서의 벤처기업은 창업자의 자질과 주요 핵심인력들의 기업에 대한 헌신도 및 기술 보유 정도, 합작 파트너로서의 적합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성장단계에서는 벤처기업의 창업자의 역량 이외에도 매출 성장률과 사업 확장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IPO 직전의 벤처기업은 수익성을 가장 중요시한다.¹⁰⁾

③ 투자집행

벤처투자는 보통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이 외에도 전환사채인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대여 등의 투자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주식의 투자는 주식을 인수하는 것인데(납입자본금의 50% 이내),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투자대상의 80% 이상을 주식인수에 투자하고 있다.¹¹⁾

④ 투자회사의 가치 육성

벤처 캐피탈은 투자한 벤처 기업을 파트너로 인식하여 수익을 내기 위한 자금 이외에 경영에 필요한 모든 요소(비즈니스 모델 재정립, 마케팅 전략 수립, 전략적 제휴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인적자원 조달, 해외시장 진출 지원, 포트폴리오

기업 간의 시너지 창출 등)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벤처 캐피탈은 업무에 대한 경력이 짧고 경험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 이후의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¹²⁾

⑤ 투자회수

벤처 캐피탈의 투자자금의 회수 시장은 크게 코스닥 시장의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M&A를 통한 벤처 캐피탈의 투자자금의 회수는 약 10%의 수준으로 대부분 코스닥의 IPO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M&A를 통한 투자자금의 회수가 약 85% 정도로 한국과 차이가 있다.¹³⁾ 물론 이 외에도 백도어 리스팅(back door listing)인 A&D(acquisition & development)에 의하여 투자자금의 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¹⁴⁾

2. 인도에 대한 한국 및 외국의 직접투자 현황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시한 인도의 투자환경 위험 평가보고서의 인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유입 실적을 보면, 2007년도 250억 달러로 전년대비 23%, 2008년에는 404억 1천 8



10) 김서균, 위의 글, 169쪽.

11) 김서균, 위의 글, 169쪽.

12) 김서균, 위의 글, 169쪽.

13) 구정환, “벤처 캐피탈시장의 발전 과제”, 「주간금융브리프(16권 42호)」(2007. 10.20~10.26), 5쪽.

14) 김서균, 위의 글, 169쪽.

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61.7%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340억 1천 3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14.4%로 감소하였다. 이는 세계 경기의 침체로 인한 투자 위축의 결과라고 한다.¹⁵⁾

또한 2009년 10월 8일 당시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이하 SEBI라고 함)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 벤

처 캐피털 투자자는 Goldman Sachs India Venture Capital Ltd., Jafco Asia Technology Investments IV(Mauritius) limited, NYLIM Jacob Balas India(FVCI) III LLC 등 135개 사였다.¹⁶⁾ 또한 2009년 9월 말까지의 외국 벤처 캐피털 투자자의 누적투자금액 및 비율은 다음의 도표와 같다.¹⁷⁾

업종	2007년 3월		2008년 3월		2009년 9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IT 관련	1,098	14.0	1,443	8.6	2,375	9.2
전기통신 관련	876	11.2	893	5.3	3,439	13.3
계약 관련	195	2.5	598	3.6	555	2.1
바이오테크놀로지 관련	9	0.1	31	0.2	51	0.2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련	59	0.8	69	0.4	290	1.1
서비스 관련	647	8.2	1,090	6.5	1,487	5.8
제조업 관련	496	6.3	748	4.5	926	3.6
부동산 관련	1,292	16.4	2,231	13.4	1,432	5.5
기타	3,184	40.5	9,602	57.5	15,295	59.2
계	7,856		16,705		25,849	

반면 한국의 경우를 보면, 2007년 연중 투자건수 100건, 투자총액 3억 달러로 전년대비 198.3%가 증가하였으나, 2008년의 경우에는 67건, 1억 9천 달러로 전년대비 36.7%가 감소되었고, 2009년에는 연중 투자건수 47건, 2억 4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27%가 증가하였다. 2008년 감소한 결과는 2007년 말의 금융위기로 인한 것으

로 보이며, 2009년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 대한 투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인도에 대한 해외직접 투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85.1%), 주투자자의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79.8%)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의 약 56.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¹⁸⁾



15) 수출입은행, 「인도의 투자환경위험 평가보고서(2010. 10. 20)」, http://kevi.koreaexim.go.kr/oz_oeis/oz_risk/investEnviro_view.jsp, 2011. 3. 16.
 16) <http://www.sebi.gov.in/investor/forventure.html>, 2011. 3. 16.
 17) <http://www.sebi.gov.in/vc/investdetails.html>, 2011. 3. 16.
 18) 주 15)의 보고서.

3. 소결

한국의 인도에 대한 직접투자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별 순위가 12위에 해당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인도에 대한 직접투자의 통계를 보면 비록 2008년도 금융 위기로 인하여 다소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9년 8월 7일 정식 서명된 한-인도 CEPA 체결로 인하여 국내 기업들의 인도에 대한 직접투자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¹⁹⁾ 더불어 인도 정부도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인도에 대한 직접투자를 위한 각종 법 제도를 고찰하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인도에서 외국인의 직접투자와 관련한 투자 규제, 특히 벤처 캐피탈의 투자 규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본다.

III. 인도의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 규제

1. 인도의 외국인 투자규제의 체계

인도의 외국인 투자 규제를 분류하면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① 일반의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에 적용되는 규제, ② 외국기관투자자(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에 의한 투자에 적용되는 규제, ③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Foreign Venture Capital Investor)에 의한 투자(이하 FVCI라고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 ④ 기타 외국 투자자에 대한 투자 및 송금 등의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²⁰⁾ 이하에서는 이 중 인도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 규제에 대하여 그 기본적인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벤처 캐피탈의 규제법령 및 규제기관

인도에 있어서 외국인의 벤처 캐피탈 투자는 해외직접투자(FDI)로 분류되고, 인도 정부(the Government of India)의 FDI 정책 및 1999년 외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이하 FEMA) 및 그 관계 법령(rules and regulations)에 의하여 규제된다.²¹⁾ 특히, 1992년 인도증권거래위원회법(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Act, 1992)(이하, SEBI) 및 그 하



19) 정무섭·김득갑, 앞의 글, 4쪽.

20) 琴浦 諒, “インド外資規制の体系と解説 - 日本企業によるインド進出にあたって - [上] [下]”, 「国際商事法務(Vol.36 No.2・3)」(国際商事法務研究所, 2008. 2・3).

21) Shivpriya Nanda, J Sagar Associates, “Structuring a Venture Capital/ Private Equity Transaction into India”, 1815 PLLI/ Corp 135, p. 139.

위 규제인 2000년 인도증권거래위원회(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 규칙(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Foreign Venture Capital Investors) Regulations, 2000)(이하 「FVCI 규칙」이라 함)에 의하여 주로 규율되고 있다. 이 FVCI의 적절한 규칙에 따라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는 SEBI에 심사 및 감독을 거쳐 등록된다.²²⁾

3. 투자의 적격성 판단

FVCI 규칙 제2조 제1항 (g)에 의하면,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foreign venture capital investor)란 인도 이외의 국가에서 설립되고, FVCI 규칙에 따라 등록되고 투자할 것을 예정한 투자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³⁾ 나아가, FVCI로 인도 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에 등록 증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의 부여 절차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²⁴⁾ 만약 등록 증서의 부여에 대한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인도 내에서 FVCI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²⁵⁾ 나아가, 인도 내에서 FVCI가 되려

면 신청자의 적격성과 관련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²⁶⁾

- ① 신청자의 실적(track record), 전문가로서의 능력, 재무건전성, 경험과 더불어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 ② 신청자가 인도 내의 투자를 할 당시에 필요한 인가를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으로부터 이미 부여받았는가의 여부²⁷⁾
- ③ 신청자가 인도 아닌 해외에서 설립된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 투자신탁(investment trust), 투자조합(investment partnership), 연금기금(pension fund), 뮤추얼 펀드(mutual fund), 기부기금(endowment fund), 대학기금(university fund), 자선단체 기금 또는 기타 사업단체인가의 여부(charitable institution or any other entity incorporated outside india)
- ④ 신청자가 인도 아닌 해외에서 설립된 자산 운용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투자 매니저(investment manager), 투자관리회사(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또는 기타 투자사업체인가의 여부(any other in-



22) FVCI는 적절한 FVCI 규칙에 따라 SEBI에 자동 등록된다(Shivpriya Nanda, op. cit, p. 141).

23)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Foreign Venture Capital Investors) Regulation, 2000(FVCI Regulation) Article 2 (1)(g), <http://www.sebi.gov.in/acts/fvcregu.pdf>, 2011. 3. 16.

24) FVCI regulation article 3(Application for grant of certificate) and article 7(Precedure for grant of certificate).

25) FVCI regulation article 10(Effecer of refusal to grant certificate).

26) FVCI regulation article 4(Eligibility Criteria).

27) FVCI regulation의 기존 내용 중에서 말미에 "or"가 있었으나 이것이 삭제되었다(2001, w. e. f. 7-6-2001).

vestment vehicle incorporated out india)²⁸⁾

- ⑤ 신청자가 벤처 캐피탈 펀드²⁹⁾에 대하여 투자할 것 또는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로서 사업을 수행하는가에 대하여 수권이 되고 있는가의 여부³⁰⁾
- ⑥ 신청자가 적절한 외국 규제 당국(regulatory authority)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가의 여부, 소득의 납세자(income tax payer)인가의 여부, 또는 신청자가 관련 규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납세자도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의 거래은행의 증명 내지 신청자의 프로모터(promoter)의 이력을 제출하였는지의 여부
- ⑦ 신청자가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하여 등록 증서의 부여가 거절되고 있는가의 여부
- ⑧ 신청자가 적절한 사업체(fit and proper person)인가의 여부³¹⁾

위와 같은 적격성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SEBI는 등록 증서를 발부하게 된다.

4. 등록신청절차 및 제출 서류

(1) 등록신청절차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의 등록 증서의 부여에 대하여 일반적인 등록신청절차는 FVCI 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³²⁾

- ① 신청자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서(Form A) 및 기타 서류를 신청수수료 5,000 미국 달러³³⁾와 더불어 제출하여야 한다(FVCI 제3조).³⁴⁾ 그 당시 신청서 및 기타 서류의 사본과 더불어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Form A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8) ②와 마찬가지로 “or”가 삭제됨.

29) 벤처 캐피탈 펀드란 FVCI article 2(1)(i)에 규정되어 있다. 즉, 벤처 캐피탈 펀드란 SEBI 규칙(1996)에 등록된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신탁이나 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기금을 의미한다. SEBI 규칙(1996)에 의하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① 자본의 공동출자(dedicated pool of capital)인가, ② 규칙에 따른 특정된 방식인가 그리고, ③ 규칙에 따른 투자인가의 여부를 고려한다.

30) ②, ④와 마찬가지로 “or”가 삭제됨.

31) 신청자 또는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가 적절한 사업체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인도 증권거래위원회는 2008년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중개업자) 규칙(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Intermediaries) Regulations, 2008)의 별지 2에 규정되어 있다(FVCI 규칙 제4A조).

32) FVCI regulation article 3(Application for grant of certificate).

33) FVCI regulation Second Schedule, Part A.

34)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의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적어도 1,000,000 미 달러의 출자의 commitment를 투자자로부터 얻지 않으면 안 된다(Firm commitment requirement for registration as Foreign Venture Capital Investors dated July 3, 2009(IMD/DOF-1/FVCI/CIR, no. 1/2009).

Form A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있어서 외국 벤처 캐피털 투자자로서의 등록 증서 부여에 관한 신청서의 양식

1. 신청자의 명칭

2. 신청자의 주소

전화번호

텔레팩스 번호

팩스 번호

인도 국내의 대표사무소의 상세

3 신청자의 분류

(인도 국외에서 설립된 연금기금, 뮤추얼 펀드,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조합, 자산운용회사, 투자매니저, 투자관리회사, 기부 기금, 대학기금, 자선단체기금 또는 기타 투자사업체로서 분류되고 있는 것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기재)

4. a) 설립 연월일

설립 장소

(설립 근거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재할 것)

b) 신청자의 주요 업무의 개요와 동 업무를 개시한 연월일

c) 신청자가 속하는 그룹의 개요(만약 있다면)

5. 다음의 서류 중 어떤 것의 제출의 유무

i. 모국의 규제 당국에 있어서 등록증의 사본

ii. 모국에 있어서 제출된 소득세 신고서류의 사본

iii. 신청자의 거래은행에 의한 신청자의 이력증명서의 사본

6. 경제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또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모회사, 지주회사 또는 관련회사의 증권관련법, 윤리·행위 규제 및 비즈니스 원칙상 규제의 위반 또는 불준수의 사례의 유무(만약 없다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

7. 신청자가 인도에 있어서 투자를 대리하여 행할 예정 고객의 명칭

8. 인도에 있어서 투자 예정 방법(인도 국내의 사업체를 통하는가, 인도 국외의 사업체를 통하는가)

(당해 사항의 상세 및 담당자 또는 컨플라이언스 오피서의 성명을 기재할 것)

9. 예정된 투자를 담당하는 인도의 지정은행 지점 및 명칭·주소

10. a) 국내 관리기업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텔레팩스 번호 및 팩스번호, 관리기업의 사업 규모, 조직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및 국내 관리기업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또는 수행했던 투자기업의 수를 포함한 국내 관리기업의 기업 개요

b) 국내 관리기업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

우리는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에 기재된 정보가 완전하고 진정한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이것을 선언한다.

또한 우리는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어떠한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통지할 것에 동의한다. 특히 우리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법, 그 규칙 및 기타 모든 관련 법률에 따라 것에 동의한다.

우리는 또한 등록 증서의 부여의 조건으로서,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따라 수시 인도증권거래위원회가 발행하는 지시에 따라 것에 동의한다.

신청자명

서명자 성명 _____ . 서명

일시 :

장소 :

주기 :

1. 인도증권거래위원회는 신청자로부터 신청서에 관하여 그 이상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2.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Foreign Venture Capital Investors」로 기재한 신청서는 밀봉을 한 봉함에 의하여, 인도증권거래위원회의 관할부서에 2통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이하의 서류를 동봉하여야 한다.

- a. 증권거래위원회 및/ 또는 자주 규제기관, 기타 적절한 규제 당국 또는 등록기관의 등록 또는 규제를 증명하는 서류
- b. 모국(home country)에 있어서 제출된 소득세 신고서류의 사본
- c. 신청자의 거래은행에 의한 신청자의 이력증명서의 사본

② 인도증권거래위원회는 인도 중앙은행에 대하여 인도 외국환관리법의 관점의 심사를 위한 신청서 1부를 송부한다.

③ 인도증권거래위원회 및 인도 중앙은행의 심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³⁵⁾ 인도증권거래위원회는 신청자에 대하여 등록을 허가하는 취지를 통지한다.³⁶⁾

④ ③의 통지를 수령한 신청자는 Part B에 특정된 방식에 따라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20,000 미 달러³⁷⁾의 등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³⁸⁾

⑤ 인도증권거래위원회는 등록비를 수령한 후 등록 증서를 부여한다(GVCI Regulation 제7조 제3항, FVCI 규칙 Second Schedule 2의 Form B 참조).³⁹⁾ 통상 인도증권거래위원회는 등록비 수령 후 21 영업일 이내에 신청자의 등록 증서를 발행한다.⁴⁰⁾

다른 한편 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인도증권거래위원회가 등록 증서의 부여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는 신청자에 해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



35) 신청 내용에 불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은 수리되지 않는다. 인도증권거래위원회가 신청을 수리하기 전에 신청자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하여 그 취지의 연락을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90일 이내까지 연장 가능)에 신청 내용의 수정을 할 기회가 부여된다(FVCI Regulation article 6(Consideration of application) para. 2, 3).

36) FVCI Regulation article 7(Procedure for grant of certificate).

37) FVCI Regulation Second Schedule Part A.

38) FVCI Regulation article 7(Procedure for grant of certificate)(2).

39) 등록 증서의 부여에 해당하여, 외국 벤처 캐피털 투자자에게는 ① 인도증권거래위원회법 및 그 규칙의 준수, ② 유가증권 custody 사업을 위한 custodian의 선임, ③ 특별 비거주자 루피 계좌 또는 외화 전용구좌의 관리를 위한 지정 은행과의 계약의 체결, ④ 이미 제공된 정보의 중요한 점에 관한 오해 또는 오해를 초래하는 점이 발견되었던 경우 또는 이미 제공된 정보에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 직접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통지할 의무가 부여되었다(FVCI regulation article 8(Conditions of certificate)).

40) http://www.sebi.gov.in/Index.jsp?contentDisp=Department&dep_id=3, 2011. 3. 15.

회를 부여한 이후에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원회가 신청 거절의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⁴¹⁾

(2) 제출서류

인도증권거래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 정보의 제공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⁴²⁾ 신청서 및 신청서 기재의 첨부서류 이외의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⁴³⁾

- ① 신청자의 기본 정관, 부속 정관 및 기타 설립서류의 사본(주요한 목적이 벤처 캐피탈 사업을 한다고 인정하고 있을 것)
- ② 신청자의 투자 스트럭처 다이어그램(structure diagram)
- ③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이사가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증서의 부여를 거절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기재한 서면
- ④ 신청자가 인도증권거래위원회 또는 기타 규제 당국에 등록되어 있는가의 여부 또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기타 사항으로 등록을 신청한 것인가 아닌가를 기재한 서면
- ⑤ 신청자의 이사(director) 또는 주요한 종업

- 원의 경력서(학력 및 경력 등을 포함한 것)
- ⑥ FVCI규칙 제11조(a)에 있어서 공시가 요구되는 투자 전략(투자대상업종, 인도에 있어서 대체로 투자예정금액 및 펀드의 운용 사이클을 포함할 것)
- ⑦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가 FVCI 규칙 별지 3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서
- ⑧ FVCI 규칙 4A조 및 2008년 인도증권거래위원회(중개업자) 규칙의 별지 2(Second schedule)에 있어서 적절한 사업체 기준(fit and proper person)에 관한 선언서
이 외에도 신청자는 증권관련 규제의 위반 또는 불준수의 유무, 관리 회사(management company) 계약의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등록 신청시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 등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5. 투자 조건 및 투자 제한

투자가능자금⁴⁴⁾ 중 최소한 66.67퍼센트 이상⁴⁵⁾



41) FVCI Regulation article 9(Procedure where certificate in not grant).

42) FVCI Regulation article 5(Furnishing of Information, clarification).

43) http://www.sebi.gov.in/Index.jsp?contentDisp=Department&dep_id=3, 2011. 3. 15.

44) 인도 국내에 있어서 투자를 목적으로 하여 제공된 자금(펀드의 관리 및 운영 비용을 공제한 것)을 말한다(FVCI Regulation article 2(definitions) (1)(i)).

45) 개정 전 FVCI Regulation, 2004에 의하면 기존의 75%가 66.7%로 변경되었다.

은 벤처 기업(Venture capital undertaking)⁴⁶⁾의 비상장 자본 주식(unlisted equity share) 또는 주식 관련 유가증권(equity linked instruments)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⁴⁷⁾ 한편 투자가능자금 중 33.33% 이하⁴⁸⁾는 ① 주식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벤처 기업의 신규 주식 공개시에 있어서 주식의 인수,⁴⁹⁾ ②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가 이미 주식에 의하여 투자를 한 벤처 기업의 부채 또는 채권(debt or debt instrument), ③ 1년이란 고정기간 내의 상장회사의 자본 주식(equity shares)의 우선 할당, ④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업(financially weak company) 또는 업적부진기업(sick industrial company)의 자본 주식 또는 주식관련 유가증권(the equity shares or equity linked instruments), ⑤ FVCI 규칙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정 목적 사업체(special purpose vehicles)에 투자되어야 한다.⁵⁰⁾ 또한 FVCI 규칙 제11조(c)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조건 및 투자제한은 운용사

이들의 종료까지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⁵¹⁾

인도에 있어서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는 투자 전략 및 펀드의 운용 사이클의 기간에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하여야 한다.⁵²⁾ 또한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는 제공된 모든 자금을 하나의 벤처 캐피탈 펀드(venture capital fund)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⁵³⁾

6.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의 일반적 의무와 책임

(1) 회계장부 등의 보존 의무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는 8년간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에 관한 업무 상태에 대하여 진정하고 공정한(true and fair)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회계장부(books of accounts), 기록 및 문서를 보존하여야 하고, 당해 보존 장소에 대하여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⁵⁴⁾



46) 인도 국내회사로서, ① 인도 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지 않고, ② 인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 관보에 통지된 네거티브 리스트에 기재된 사업이나 업종을 포함하지 않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FVCI regulation article 2(1)(m)).

47) FVCI Regulation article 11(Investment Criteria for a Foreign Venture Capital Investor) (c)(i).

48) FVCI Regulation, 2004에 의하면 기존의 25%에서 개정된 것이다.

49) 일년이란 고정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subject to lock-in period of one year)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50) FVCI Regulation article 11(Investment Criteria for a Foreign Venture Capital Investor) (c)(ii).

51) FVCI Regulation article 11(c) Explanation 1.

52) FVCI Regulation article 11(a)(d).

53) FVCI Regulation article 11(b).

54) FVCI Regulation article 12(1)(2).

(2) 정보의 요구권

증권거래위원회는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에 대하여 언제라도 그 사업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정보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⁵⁵⁾ 모든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는 분기마다 벤처캐피탈 사업에 대하여 보고서를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⁵⁶⁾

(3) 일반적인 의무와 책임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 또는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를 대신하여 행하는 글로벌 관리기업(global custodian)은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를 위하여 증권의 관리기업으로 행위하기 위하여 국내 관리기업과 관리기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⁵⁷⁾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는 국내 관리기업이 ① 인도에 있어서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의 투자를 감시하고, ②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③ 인도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요구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⁵⁸⁾

(4) 지정은행의 선정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는 외화전용구좌(for-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accounts) 또는 특별 비거주자용 루피 구좌(special non-resident rupee account)를 개설하기 위하여 지정은행(designated bank)으로써 인도 중앙은행에 의하여 승인된 은행의 지점을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⁵⁹⁾

7. 기타

이 외에도 제5장 조사 및 심사(Inspection and Investigations), 제6장 불이행의 경우 소송의 절차(Procedure for Action in Case of Default)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 즉, 제5장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이며, 제6장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제16조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사권(Board's right to inspect or investigate), 제17조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한 조사 및 심사에 대한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의 의무(Obligation of Foreign Venture Capital Investor on investigation or inspection by Board), 제18조 리포트의 제출(Submission of the Report), 제19조 외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명령권(Board's right to issue any direction to Foreign Venture Capital Investor), 제20조 증권거래위원회의 등록 증서



55) FVCI Regulation article 13(1)(2).

56) Reporting of Venture Capital Activity dated April 29, 2003(SSEBI/MFD/VCF/CIR no 2/7350/2003).

57) FVCI Regulation article 14(1).

58) FVCI Regulation article 14(2).

59) FVCI Regulation article 15.

의 중지 또는 취소권(Board's right to suspend or cancel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제21조 증서의 중지(Suspension of certificate), 제22조 증서의 취소(Cancellation of certificate), 제23조 중지 또는 취소의 명령 방식(Manner of making order of cancellation or suspension)이다.⁶⁰⁾

IV. 맺는 말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인도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인도는 인구가 약 11억 5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시장 규모가 엄청나고,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인도에 대한 직접투자를 할 가치가 매우 크고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도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에 신고만 하는 자동승인 방식과 중앙정부(FIPB)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하였으며, 투자 원금과

이윤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나아가 2010년 4월 1일 이후로는 FDI 규정, 제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합한 통합 FDI 정책을 발표하여 기존 프레스 노트 형식으로 사전 예고도 없이 변경되던 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물론 인도에 대한 직접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애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본 고찰은 한국의 인도에 대한 직접투자, 특히 외국인 벤처 캐피탈 투자의 규제인 FVCI 규칙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향후 이러한 규칙과 더불어 인도에 대한 직접 투자를 위해서 관련 법제도에 대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고 재 종

(해외입법조사위원, 선문대학교 법대 교수)



60) <http://www.sebi.gov.in/acts/fvcregu.pdf>, 2011. 3. 16.